

미 양 마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항공 운송 서비스													
<p>1. 항공기 수리 및 관리 서비스</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p> <p>3) (a) 외국 서비스 공급자 및/또는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투자법, 회사법(1914)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됨. (b) 외국인 투자법(1988)에 따라 미얀마 국민 또는 최소 35%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외국인 투자금은 미화 30만 달러임. 법인 설립 형태로는 개인 회사, 합명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가 있음. (c)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설립은 미얀마 회사법(1914)에 따름. 서비스 제공 기업 및 지사의 경우 최소 출자금(현금)은 현재 공식 환율 기준 30만 짜트에 해당하는 미화임. (d) 공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법인설립은 특별 회사법(1950)과 미얀마 회사법(1914)에 따름. (e)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p> <p>3) (a) 소득세법(1974)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인)는 다음 원천 징수세의 적용을 받음.</p> <table border="0" data-bbox="1211 660 1711 975">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u>소득 종류</u></th> <th style="text-align: left;"><u>비거주 외국인</u></th> </tr> </thead> <tbody> <tr> <td>- 이자</td> <td>15%</td> </tr> <tr> <td>- 면허 및 상표권, 특허권 등</td> <td>20%</td> </tr> <tr> <td>- 정부기관, 시도정부 및 협동조합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td> <td>3.5%</td> </tr> <tr> <td>-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td> <td>3%</td> </tr> </tbody> </table> <p>(b)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미얀마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 장기 리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p>	<u>소득 종류</u>	<u>비거주 외국인</u>	- 이자	15%	- 면허 및 상표권, 특허권 등	20%	- 정부기관, 시도정부 및 협동조합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5%	-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	
<u>소득 종류</u>	<u>비거주 외국인</u>												
- 이자	15%												
- 면허 및 상표권, 특허권 등	20%												
- 정부기관, 시도정부 및 협동조합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5%												
-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a)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이민법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는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하고 그 이후 연장 가능함. (b) 관리자급에 한하여 미얀마 입국이 허용됨.</p>	<p>4) (a) 합작회사, 대표 사무소 또는 다른 형태의 법인 및/또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는 각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b) 미얀마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미얀마의 출입국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c) 미얀마 내의 모든 외국인은 미얀마의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얀마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음. (d)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는 노동부에 등록해야 함.</p>											
<p>2. 항공 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외국 서비스 공급자 및/또는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투자법(1998), 회사법(1914)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소득세법(1974)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인)는 다음 원천 징수세의 적용을 받음.</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 종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거주 외국인</td> </tr> <tr> <td>- 이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 면허 및 상표권, 특허권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정부기관, 시도정부 및 협동조합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r> <tr> <td>-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able>	소득 종류	비거주 외국인	- 이자	15%	- 면허 및 상표권, 특허권 등	20%	- 정부기관, 시도정부 및 협동조합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5%	-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	
소득 종류	비거주 외국인												
- 이자	15%												
- 면허 및 상표권, 특허권 등	20%												
- 정부기관, 시도정부 및 협동조합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5%												
-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p>	<p>(b) 외국인 투자법(1988)에 따라 미얀마 국민 또는 최소 35%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외국인 투자금은 미화 30만 달러임. 법인 설립 형태로는 개인 회사, 합명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가 있음.</p> <p>(c)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설립은 미얀마 회사법(1914)에 따름. 서비스 제공 기업 및 지사의 경우 최소 출자금(현금)은 현재 공식 환율 기준 30만 짜트에 해당하는 미화임.</p> <p>(d) 공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법인설립은 특별 회사법(1950)과 미얀마 회사법(1914)에 따름.</p> <p>(e)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p> <p>4) (a)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이민법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는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하고 그 이후 연장 가능함.</p> <p>(b) 관리자급에 한하여 미얀마 입국이 허용됨.</p>	<p>(b)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미얀마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 장기 리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p> <p>4) (a) 합작회사, 대표 사무소 또는 다른 형태의 법인 및/또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는 각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p> <p>(b) 미얀마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미얀마의 출입국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p> <p>(c) 미얀마 내의 모든 외국인은 미얀마의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얀마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음.</p> <p>(d)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는 노동부에 등록해야 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사업 서비스			
1. 광고 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2. 인쇄 및 출판 (CPC 8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3. 시청각 서비스 -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서비스 (CPC 96121) ¹⁾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제작자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영화를 제작할 수 있음. 투자 계약 또는 주식 지분 투자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미얀마 국민이 과반수 주식을 보유한 영화 제작 합작 회사는 현대적인 제작 스튜디오 및 제작 파크를 설립할 수 있음. -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1988년)에 따라 외국 서비스 제공자 및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동 법에서 미얀마 국민 또는 최소 35%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됨. 유한 책임 회사는 미얀마 회사법(1914년)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1) 본 양허표의 서비스 분야 분류는 상품분류(CPC) version 1.1을 기반으로 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및 외국 기관은 미얀마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정부로부터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것은 가능함. -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 <p>4)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이민법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름. (국내법에 따르면) 외국인 중 관리자, 임원, 전문가 및 숙련 기술자에 한하여 1년의 체류 허가가 부여됨. 외국인이 초기 체류 허용 기간 이후까지 체류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p>	<p>4) 시장 접근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은 국내 규칙 및 규정을 따름. 소득세의 표준 세율은 짜트화 소득의 경우 순이익의 30%, 외국환 소득의 경우 순이익의 2%에 해당함.</p>	
<p>4. 영화관 서비스 및 영화 상영 서비스 (CPC 9615)</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5. 회계, 감사 및 장부관리 서비스 (CPC 862)</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정식 등록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투자법에 기재된 요건을 충족한 후에 미얀마에 등록된 공인회계사와 합명 회사 또는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이민법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 4)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것과 같음. 4) 약속 안함.</p>	
<p>6.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p>	<p>1)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a)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1988년), 미얀마 회사법(1914)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서비스 제공자 및 공급자의 상업적 주체가 허용되며 동 법에 따라: (i) 100% 외국인 투자회사 또는 (ii) 미얀마 국민 또는 최소 35%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것과 같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미얀마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 장기 리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p> <p>c)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p> <p>4) a) 미얀마 투자법, 미얀마 노동법, 이민법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름.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리자, 전문가, 기술 전문가는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그 이후 연장 가능함.</p> <p>b) 전통적 노동 공급 국가에서 입국한 숙련 노동자에게는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특혜를 부여함.</p> <p>c) 비숙련 노동자는 미얀마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p>	<p>4) a)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것과 같음.</p> <p>b) 정부는 미얀마의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p>	
<p>7. 통번역 서비스 (CPC 87905)</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상 운송 서비스			
1. 국제 여객 운송 (연안 해운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2. 국제 화물 운송 (연안 해운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1988년)과 미얀마 회사법(1914)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서비스 제공자 및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가 허용되며 동 법에 따라: (i) 100% 외국인 투자회사 또는 (ii) 미얀마 국민 또는 최소 35%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외국인 투자금은 미화 30만 달러임. 법인 설립 형태로는 개인 회사, 합명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가 있음. b) 공기업을 제외한 법인 설립은 미얀마 회사법(1914)에 따름. 서비스 제공 기업 및 지사의 경우 최소 출자금(현금)은 현재 공식 환율 기준 30만 짜트에 해당하는 미화임. 공기업에 관한 투자자의 경우 법인설립은 특별 회사법(1950년)과 미얀마 회사법(1914년)에 따름.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공기업을 제외한 법인설립은 미얀마 회사법(1914)에 따름. 서비스 제공 기업 및 지사의 경우 최소 출자금(현금)은 현재 공식 환율 기준 30만 짜트에 해당하는 미화임. 공기업에 관한 투자자의 경우 법인설립은 특별 회사법(1950년)과 미얀마 회사법(1914년)에 따름.</p> <p>(c)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미얀마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 장기 리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p> <p>(d)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이민법 등 현행법과 규정을 따름. 별도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는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하고 그 이후 연장 가능함.</p> <p>(e)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p> <p>4)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는 미얀마 입국이 허용됨.</p>	<p>외국 기관 및 개인은 미얀마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 장기 리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p> <p>법인은 미얀마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미얀마 법정 내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음.</p> <p>4) (a) 합작회사, 대표 사무소 또는 다른 형태의 법인 및/또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는 각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p> <p>(b) 미얀마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미얀마의 출입국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p> <p>(c) 미얀마 내의 모든 외국인은 미얀마의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얀마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저장 및 창고 서비스	<p>1)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a)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1988년), 미얀마 회사법(1914)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서비스 제공자 및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가 허용되며 동 법에 따라: (1) 100% 외국인 투자회사 또는 (2) 미얀마 국민 또는 최소 35%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과의 합작 회사 설립이 허용됨. 법인 설립 형태로는 개인 회사, 합명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가 있음. (b) 공기업을 제외한 법인설립은 미얀마 회사법(1914)에 따름. 서비스 제공 기업 및 지사의 경우 최소 출자금(현금)은 현재 공식 환율 기준 30만 짜트에 해당하는 미화임. 공기업에 관한 투자의 경우 법인설립은 특별 회사법(1950년)과 미얀마 회사법(1914년)에 따름.</p>	<p>(d)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는 노동부에 등록해야 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소득세법(1974)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인)는 다음 원천 징수세의 적용을 받음.</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left;">소득 종류</td> <td style="text-align: left;">비거주 외국인</td> </tr> <tr> <td>- 이자</td> <td>15%</td> </tr> <tr> <td>- 면허 및 상표권, 특허권 등</td> <td>20%</td> </tr> <tr> <td>- 정부기관, 시도정부 및 협동조합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td> <td>3.5%</td> </tr> <tr> <td>-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td> <td>3%</td> </tr> </table>	소득 종류	비거주 외국인	- 이자	15%	- 면허 및 상표권, 특허권 등	20%	- 정부기관, 시도정부 및 협동조합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5%	-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	
소득 종류	비거주 외국인												
- 이자	15%												
- 면허 및 상표권, 특허권 등	20%												
- 정부기관, 시도정부 및 협동조합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5%												
-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c)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미얀마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 장기 리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p> <p>(d)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이민법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름. 별도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는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하고 그 이후 연장 가능함.</p> <p>(e)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p> <p>4)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관리자, 전문가, 기술 전문가는 미얀마 입국이 허용됨.</p>	<p>외국 기관 및 개인은 미얀마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 장기 리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p> <p>법인은 미얀마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미얀마 법정 내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음.</p> <p>4) (a) 합작회사, 대표 사무소 또는 다른 형태의 법인 및/또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는 각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p> <p>(b) 미얀마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미얀마의 출입국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p> <p>(c) 미얀마 내의 모든 외국인은 미얀마의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얀마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음.</p> <p>(d)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는 노동부에 등록해야 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금융 서비스</p> <p>1. 해손 및 손해 사정 서비스 (CPC 8143)</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다음과 같은 현행 법률 및 규정을 따름: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1988년) 미얀마 회사법(1914년) 미얀마 보험법(1993년) 보험사업법(1996년) 미얀마 노동법과 이민법 등</p> <p>-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p> <p>4)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선임 관리직 전문가 및 기술사원에 한하여 보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임국이 허용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다음과 같은 현행 법률 및 규정을 따름: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1988년) 미얀마 회사법(1914년) 미얀마 보험법(1993년) 보험사업법(1996년) 미얀마 이민 규칙 및 절차 등</p> <p>4) 다음과 같은 현행 법률 및 규정을 따름: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1988년) 미얀마 회사법(1914년) 미얀마 보험법(1993년) 보험사업법(1996년) 미얀마 이민 규칙 및 절차 등</p>	
<p>2. 보험계리 서비스</p>	<p>1) 제한 없음.</p>	<p>1) 다음과 같은 현행 법률과 규정을 따름: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1988년) 미얀마 회사법(1914년) 미얀마 보험법(1993년) 보험사업법(1996년) 등</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2) 다음과 같은 현행 법률과 규정을 따름: 미안파 외국인 투자법(1988년) 미안파 회사법(1914년) 미안파 보험법(1993년) 보험사업법(1996년) 등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금융 서비스 업종 (CPC 811) 3. 외국 은행의 대표 사무소 서비스	1) 약속 안함. ²⁾ 2) 약속 안함. 3) 외국 은행은 미안파 ³⁾ 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현행 법률과 규정을 따름: 미안파 외국인 투자법(1988년) 미안파 회사법(1914년) 미안파 보험법(1993년) 보험사업법(1996년) 미안파 노동법과 이민법 등 -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2)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3) 미안파 중앙은행법 및 미안파 금융기관법에 따라 미안파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건설 서비스</p> <p>토목 건설 작업 서비스 (CPC 513)</p>	<p>1) 약속 안함.⁴⁾</p> <p>2) 제한 없음.</p> <p>3) (a) 외국 서비스 공급자 및/또는 제공자의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투자법(1998), 회사법(1914)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됨. 동 법에 따라 미얀마 국민 또는 최소 35%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이 허용됨.</p> <p>(b)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미얀마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 장기 리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함.</p> <p>(c)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p> <p>4) (a)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이민법 등 현행법과 규정을 따름. 별도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는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하고 그 이후 연장 가능함.</p> <p>(b) 전통적 노동력 공급 국가 노동자에게 입국 및 거주 특혜 부여함.</p> <p>(c) 비숙련 노동자는 미얀마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시장 접근권에 기재된 것과 같음.</p> <p>4) (a) 시장 접근권에 기재된 것과 같음. (b) 정부는 미얀마의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c) 비숙련 노동자는 미얀마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p>	

4)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 (CPC 7523) - 전자메일 - 음성 메일 - 전자 - 데이터교환(EDI) - 팩스 - 전신 -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1) (a)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b) 국가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2) (a)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b) 국가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3) - 우선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방법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함. 현행 규정에 따라 제투자 프로그램은 상환계획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독점권은 허용되지 않음. - 공기업법 제3장에 기재된 서비스 활동은 제약됨. 그러나 그러한 활동은 동 법 제4장에 따른 내각의 통보가 있을 경우 허용됨. 4) (a) 관리자 및 관련 숙련 기술자에 한하여 업무 활동 수행을 위해 임용하는 것이 허용됨. 외국인 회사는 적절한 방식으로 등록을 거친 후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무소는 다른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 (b) 그러한 모든 서비스는 미얀마 우정통신부에 의하여 제공 및 운영됨. (c)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 미얀마 노동법, 이민법 등 현행법과 규정에 따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투자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장비를 가져와야 함.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세무, 이민 및 노동과 관련된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4) (a) 시장 접근권에 기재된 것과 같음. (b) 정부는 미얀마의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통신 규정 하에서 모든 형태의 통신 서비스는 미얀마 우정통신부의 규제를 받음. 미얀마 우정통신부는 국영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서비스 제공자임.